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 안 번 호 제3436호

제출년월일 2024. 2. 23. 제 출 자 김 현 주 의원

1. 심사경과

○ 본 안건은 2024년 2월 23일 김현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○ 이 조례는 노인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한 생활과 사회적 교류를 도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지원대상(안 제3조)
- 다. 운영 및 운영자와 급식장소 지정(안 제4조~제5조)
- 라. 지도점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(안 제6조~제7조)
- 마. 표창(안 제8조)

4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고령(75세 이상)의 노인, 수급자·차상위계층 노인, 결식 우려 노인에 대해 무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조례의 제정이 관내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형식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